

#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 정 : 2010. 2. 25.

전면개정 : 2012. 2. 25.

전면개정 : 2016. 2. 24.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장애인력비협회 (이하 "장애인력비협회"라 표기)에서 합리적인 국가대표 임원 및 선수 선발을 위해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협회의 선수 선발 및 훈련 일수 및 경기력 능력에 대해 평가하며 한국 장애인력비의 발전을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징계함으로써 건전한 체육 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국가대표'란 '국가대표선수' 및 '국가대표지도자'를 말한다.

② '국가대표선수'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4의 2에 의거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장애인체육회"라고 한다.) 또는 장애인력비협회가 국제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자를 말한다.

③ '국가대표지도자'란 국가대표 훈련기간 및 국제대회 기간 동안 국가대표선수를 지도·관리하기 위해 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력비협회에서 선임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력비협회에서 실시하는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해서는 법령 및 상위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4조(국가대표 선발 및 보고)** ① 장애인력비협회는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선수 및 지도자는 장애인력비협회에서 선발하여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함으로써 국가대표의 자격을 갖는다.

② 장애인력비협회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장애인력비협회에 의하여 종목별 국제대회에 파견하는 선수 및 지도자는 종목별 선발절차를 거쳐 확정된 후 종목별 국가대표로서 자격을 갖는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 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4.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폭력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중에서 3년 미만의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기간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3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결격
5.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성추행,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중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5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결격
6.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승부조작 기타 부정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는 영구결격
8.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9. 가맹단체, 민간단체(시도장애인체육회 등) 등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가맹단체, 민간단체(시도장애인체육회 등) 등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부정부패 또는 비리 등의 행위로 퇴사하거나 징계 등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
1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지도자에 한함)
13. 가맹단체(시도지부 포함)의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의 경우 국가대표지도자를 겸직할 수 없고, 상기 직위를 사임한 경우라도 사임 후 2년 동안은 국가대표지도자로 선발될 수 없음

**제6조(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국가대표는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임을 명심하고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야 하며,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 2 장 전문체육위원회

**제7조(전문체육위원회 설치)** 장애인력비협회는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체육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국가대표 강화훈련 참가 선수 및 지도자 선발에 관한 사항
2. 국가대표 강화훈련의 실시, 지도, 감독,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3. 국제경기대회 국가대표 참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가대표 경기력향상과 관련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위원 7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② 위원회의 위원들 중에는 장애인선수출신 1인, 여성 1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장애인선수출신 이면서 동시에 여성일 경우에는 장애인선수출신 1인 및 여성 1인 포함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④ 선수 및 지도자의 선발기준, 확정 관련 안건은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 할 수 없다. 다만, 선수의 부상, 경기력 부진 등에 따른 일부 선수 교체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⑤ 장애유형별 선수선발 시에는 해당 장애유형분과위원회를 포함하여 구성·운영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장애인력비협회 회장이 위촉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당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력비협회 회장이 위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구성 시 준수사항)** ①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 ② 장애인력비협회 회장과 친족인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동일 대학 출신자 또는 동일 대학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 ④ 위원은 해당 종목 지도자를 겸직할 수 없다.

## 제 3 장 선 수

**제12조(국가대표선수 선발)** ① 장애인력비협회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선수는 장애인력비협회가 사전에 정한 선발기준 및 일정에 따라 선발하여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고, 종합대회 국가대표선수 선발은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훈련에 참가 할 수 있다.

- ②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자비 출전 선수일 경우(친선경기 포함) 장애인력비협회의 책임 하에 관리 감독한다.

**제13조(선발시기)** ① 국제대회 파견을 위한 국가대표선수의 선발 시기는 이를 사전에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고, 해당 국제기구가 정한 일정에 따라 선발하여야 한다.

- ② 국가대표 상시훈련은 차기년도 국가대표선수에 대하여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선발을 완료하여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변경 시 이를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선발기준 및 절차)** ① 국가대표선수 선발은 최소 연 1회 이상 공개 선발전을 통한 정기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상, 경기력 부진 등 결원에 따른 교체의 경우, 단체종목은 감독 추천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선발하고, 개인종목은 선발전 최종성적 기준으로 상위성적 선수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에서 최종 선발한다.

③ 국가대표선수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가대표 선발일 6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지내용을 확정하여 장애인력비협회, 사·도장애인력비협회 또는 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관련 단체에 통지한다.

1. 국가대표 선수 선발개요
2. 국가대표 선수 선발기준, 방법 및 근거
3. 해당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대회 참가 기준 및 요강
4. 기타 국가대표 선수 선발 관련자료 등

④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되어 소속팀으로부터의 차출 시 대표선수의 원 소속팀과 반드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임무)** 국가대표선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훈련 중 지도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지도자의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거나 훈련장 무단이탈 금지
3. 기타 경기력향상과 관련된 제반 사항

## 제 4 장 지 도 자

**제16조(국가대표지도자 선발)** ① 국가대표지도자(감독, 코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선발한다.

1. 감독은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7년 이상(코치의 경우 5년이상)의 선수경력 또는 5년 이상(코치의 경우 2년 이상)의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휠체어력비 국가대표선수 은퇴자로 장애인올림픽대회 1회 이상 출전 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지도자는 지도자로 선발된 후 2년 이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위 기한 내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발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으로 한다.

3. 장애인력비협회에서 발급한 경기지도자 자격 소지자로서 휠체어력비 경기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② 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한 장애인 특수종목의 경우, 제16조 ①항 2호, 3호에 의거 장애인력비협회의 추천에 의거 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국가대표지도자로 선발한다.

③ 감독, 코치 이외에 보조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 장애인올림픽대회(농아인올림픽 포함),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농아인아시아경기대회 포함), 유형별종

합대회 등 종합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지도자(감독에 한함)는 해당 가맹단체의 추천에 의하되, 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단 장애인올림픽대회의 경우 대회 대비 훈련개시 최소 3개월 전에 국가대표지도자(감독에 한함)를 선발하여야 한다.

⑤ 국가대표지도자(감독, 코치 및 보조지도자를 모두 포함)는 최종 선발 당시까지 성폭력관련 범죄경력(징계경력을 포함)이 없는 자이어야 하고 최종 선발된 이후 장애인체육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을 년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후 7일 이내 이수확인서를 장애인력비협회(또는 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국가대표지도자 선발방법 및 시기)** ① 국가대표지도자의 선발은 공개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인력비협회 전문체육 위원회 의결 후 이사회에서 확정한다.

② 선발과정 및 결과는 공개하여야 하며, 회의록 등 선발근거 자료를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국가대표지도자의 임용 및 재임용 시, 해당 지도자의 평가보고서를 작성, 평가하고, 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국가대표지도자 선발은 장애인력비협회 국가대표선수 선발에 해당 지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대표선수 선발 실시 전에 확정하여야 한다.

**제18조(임기 및 역할)** ① 국가대표지도자의 신분 보장과 안정적인 선수 관리를 위해 최소 1년 이상 임기(계약기간)를 보장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국가대표지도자인 감독은 코치, 보조지도자 및 국가대표선수 선발 시 위원회에 서면 또는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감독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되, 감독의 의견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제19조(임무)** 국가대표지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대표선수의 훈련 및 관리
2. 훈련계획서 작성 및 선수별 훈련성과 평가
3. 일일 훈련일지 작성
4. 각 경기단체별 국가대표 훈련대상 선수 선발 참여
5. 경기력 부진선수 교체 건의
6. 국가대표 훈련참가자의 해외전지훈련 및 국제대회 파견 시 인솔
7. 각종 국제대회 참가보고서 작성 및 분석결과 보고
8. 선수 신상파악, 사고발생 시 즉시보고
9. 훈련원 지시사항 이행
10. 기타 경기력향상과 관련되는 사항

## 제 5 장 징 계

**제20조(징계)** ① 장애인력비협회는 국가대표를 구성함에 있어 본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국가대표에 대하여 징계 할 수 있다.

② 징계는 장애인력비협회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장애인력비협회에 대한 징계는 장애인체육회가 한다.

③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징계: 경고, 견책, 감봉
2. 중징계: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 제 6 장 보 칙

**제21조(훈련제외)** 국가대표선수 및 국가대표지도자의 선발과 관련된 부정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는 국가대표 강화훈련에서 제외한다.

**제22조(국가대표선발 규정 제·개정)** ① 장애인력비협회는 장애인체육회 국가대표선발 규정을 준용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맹단체별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력비협회에서 제·개정된 국가대표 선발규정은 제·개정 후 즉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3조(국가대표 선발규정의 개정시기)** ① 확정된 장애인력비협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의 개정은 규정 제·개정 후 최소 1년 이상 경과 후에 개정할 수 있으며, 장애인력비협회에서 이사회 의결, 확정 후 개정 내용을 장애인체육회에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다만, 규정개정을 완료하고 시행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1년 이내 제·개정이 필요할 경우, 장애인력비협회는 반드시 사전에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4조(자료의 보관)** 장애인력비협회는 국가대표 선발기준, 과정,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 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선발근거(선발결과 기록지, 분석지, 및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최소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부 칙 (12. 2. 25.)**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 2. 25.)

## **부 칙 (2016. 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전면개정 2016. 2. 24.)